

응 시 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응시자	성명		생년월일	국적
	주소			
	연락처	전화번호(자택)		사진 (3.5cm × 4.5cm) (압인)
		휴대전화번호		
전자우편				
응시 면허의 종류	[]제1급 조종면허, []제2급 조종면허, []요트조종면허			

응시원서 접수번호	제 호			응시원서 접수일		
응시 횟수	필기시험			실기시험		
	시험일시	응시번호	결과	시험일시	응시번호	결과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
유의사항

-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.
- 시험장에서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(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하며,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)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이며,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입니다.
- 면허시험에 합격했다라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면허시험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일자의 변경은 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(boat.kcg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